

2002. 10. 16. (수) 10:00
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

심 사 결 과 보 고

<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>

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

위원장 이 문 행 의원

[2002 년 도 공 유 재 산 변 경 관 리 계 획 안]
[심 사 보 고]

1. 심사경과

가. 의안제출

○ 제 출 일 : 2002. 8. 28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9. 3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15, 제9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

다. 의안번호 : 제 2002-30호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합천댐 간접보상토지 기부채납(취득) : 토지 19필지 6,077㎡(1,838평)
 - 합천댐 조성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간접보상 매입한 토지를 재매각코자 추진하였으나 미 매각된 토지를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코자 하는 합천댐 관리단의 의견 제시에 의함
- 공설공원묘지 부지 확장(매입) : 토지(임야) 2필지 3,611㎡(1,092평)
 -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창읍 가지리 산170번지(거창군공동묘지)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공유지의 묘지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조성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

구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	비고
계		토지 : 21 필지		9,688	17,921	
취득	토지	남상면 임불리 575	대	228	654	기부채납 (합천댐)
	“	“ 578	“	136	359	
	“	“ 579	“	116	306	
	“	남상면 전척리 496-4	도로	835	838	
	“	남하면 대야리 776	답	291	2,057	
	“	“ 1144	“	840	82	
	“	“ 1149	“	241	37	
	“	“ 1150	“	109	2,880	
	“	“ 1156	“	575	1,127	
	“	“ 1157	답	225	792	
	“	“ 525-2	전	398	637	
	“	“ 527	“	334	639	
	“	“ 528-1	대	300	438	
	“	“ 528-2	전	132	193	
	“	“ 702-1	“	170	700	
	“	“ 703	답	547	156	
	“	“ 704	전	137	1,652	
	“	“ 780	답	533	1,125	
	“	“ 786	“	330	1,728	
		“	거창읍 가지리 산 168-5	임야	2,264	1,274
	“	“ 산 168-6	임야	1,347	242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, 합천댐 간접보상토지 기부채납 재산 토지 19필지 6,077㎡와 공설공원묘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2필지 3,611㎡의 취득 건으로
- 합천댐 간접보상토지 기부채납 재산 토지 19필지 6,077㎡는, 합천댐 조성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간접보상 매입한 토지를 재매각 추진 하였으나 미매각된 재산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조건없이 기부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으며, 등기부등본상 사권 설정 등이 없어 다른 문제 점은 없으며
- 또한,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2필지 3,611㎡는, “거창읍 가지리” 공설

공원묘지 조성지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설공원묘지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매장 및 납골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함으로써 이는 묘지난과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향후 공설 공원묘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(안)은, 합천댐 간접보상토지 기부체납 재산 토지 19필지 6,077㎡와 공설공원묘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2필지 3,611㎡의 취득 건으로
- 합천댐 간접보상토지 기부체납 재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지역 지역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조건없이 기부코자 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으며, 등기부등본상 사권 설정 등이 없어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
- 또한,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거창읍 가지리 공설공원묘지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매장 및 납골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함으로써 이는 묘지난과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향후 공설공원 묘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생략